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3.15. (금) 조간	배포	2024.3.14. (목)
----	-------------------	----	----------------

담당부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팀 장	정윤미	(02-3145-8285)
	불법사금융대응2팀	담당자	선임조사역	김동균	(02-3145-8526)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4 - 10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
- 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①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 ②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③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 ④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I.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1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 美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으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 홈페이지 상 “저위험”, “중위험” 등 문구와 펀드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 펀드인 것처럼 현혹

[투자시 상품 설명 화면]

USD 연금형 펀드

투자자를 위한 안정 수익률을 최소 2.0% 지급하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험이 있는 일반 펀드인 것처럼 “저위험” 등 용어를 사용

한도 최대 4.5억원

수익률 최소 월 0.9%~최대 월 1.7% (원화환율) 최소 월 2.0%~최대 월 2.8%

안정형 **저위험** 독립형 중도해지가 가능 익월지급

펀드 운용 비중 (업종별 USD 분배)

업종명	주식 내 비중 (%)
미분류	29.12
생산제조	20.16
금융	17.88
산업재서비스	6.95

펀드 운용비중을 임의로 보여주며 정상 펀드인 것처럼 위장

2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광고 유포

-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약 2~3주)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글을 게시
 -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하여 투자자의 신뢰 확보
- * 현재는 해당 언론의 협조로 광고성 기사는 대부분 삭제

[단기간 광범위한 홍보성 영상·광고글 사례]

3

유명 유튜버 계정의 영상·사진을 도용하여 홍보

-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버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동 계정에 도용 영상을 게시한 후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위장
- 특히,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하여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하는 사기 수법으로 홍보

[유튜브 영상 및 유튜버 사진 도용]

진짜 유튜브 계정1	가짜 유튜브 계정1	진짜 유튜브 계정2	가짜 유튜브 계정2
			

4

직접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

- 단체 채팅방이나 1:1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수법과 다르게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권유는 이루어지지 않음
-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

* SNS를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블로그·카페·지식인 글을 통해 현혹]

블로그에서 펀드 가입방법 안내	카페 자문자답 추정 홍보글	지식인 자문자답 추정 홍보글
		

5

입금계좌로 개인계좌를 안내하고 60일간 청약철회/해지 거부

-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
-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청약철회/해지 거부

[중도해지 거부 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주]펀드의 고객지원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fund 고객지원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약 해지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청약 철회 해지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회사의 1분기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의 청약 철회에 대한 해지 요청을 받아

불투명한 사유로 청약철회 거부

청약철회와 해지를 구분하지 못하며 60일 이후 해지 "신청"이라고 답변 (60일 이후 해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아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 60일이 지난 후부터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청약 철회를 원하시면, 중도 해지 가능 날짜인 [04월01일]에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자는 현재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60일 이후에도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II. 주요 피해 사례

유튜브 및 블로그 등 광고에 현혹된 피해 사례

- ◆ 20대 피해자 A씨는 '24.1월말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를 시청하던 중 해당 계정에서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본 후 관심이 생겨 포털에서 "**연금형 달러 펀드**"를 검색
- 검색결과,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있고 **블로그·지식인**에는 해당 펀드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국내펀드 대비 장점이 있다는 **긍정적 내용만** 있어 투자를 결심
- A씨가 S사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을 하자 **한글 홈페이지**로 자동 변경되었고, 정확한 투자대상은 모르나 **최소 월 2.0%~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러 펀드에 2천만원을 투자
- S사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터라 **의심 없이** 입금
- 이후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였다가,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되어 S사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 되었으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회신 받고 좌절

도용한 유명 유튜브 영상 사이에 불법업자의 홍보 영상을 삽입

동시 다발적 홍보 콘텐츠 유포

광고글에 현혹되어 잘 모르는 투자상품에 투자

광고글에 현혹되어 대포통장을 의심하지 못함

환불요청시 명확한 거절사유 지급기일 제시 없이 거절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 지식인 등을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 업자가 자문 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있으니 믿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정상적인 영상처럼 보이더라도 유명 유튜브의 계정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
-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떡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

②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

* 「자본시장법」 §11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③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예: OO증권 홍길동)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④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